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4. 11.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의 국·내외 연수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근속연수가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차등 지원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8호 가목 중에서 ,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를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단, 근속연수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15조 제8호 가목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를,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단, 근속연수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
1.~ 7.(생략)	1.~ 7.(현행과 같음)	1.~ 7.(현행과 같음)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8. ----- ----- ----- -----	8. ----- ----- ----- -----
가.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가.-----
나. (생략)	퇴직 예정자	-----단,근속연수
9.~10. (생략)	나. (현행과 같음) 9.~10. (현행과 같음)	<u>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u> 나. (현행과 같음) 9.~10. (현행과 같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8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단, 근속연수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